

최신 판례 예규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 시기

소득세제과-238, 2022.05.24

질 의

-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회 신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지분으로서 부여시점에 지분의 소유권 이전 사실이 확인되고 지분에 대한 이익분배, 의결권 행사등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경우 별도 약정에 따라 약정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는 때 기 부여받은 지분을 법인에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지분을 부여받은 시점이 수입시기인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제46조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소득-8492, 2022.08.11

질 의

- 질의법인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명의 변경이 발생함

질의

- 집합투자증권이 매도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해 보유기간 과세제도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제46조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받은 보상금은 열거된 수입사업소득 아님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제과-343, 2022.08.29

질 의

- 의료법인이 지급받은 코로나9 관련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회 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입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922, 2022.12.06

질 의

- 농업을 경영하던 피상속인이 '22.3월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영농상속을 받고 영농에 계속 종사함
-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에 개인영농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법인전환함(법인전환 전까지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
- * 상속세및증여세법 18②(2) 및 상증령 16에 따른 영농상속의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

질의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3개월 전에 개인영농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상증령 16②(2)가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영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을 임대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부동산-4280, 2022.12.15

질 의

- 소득령 §155<20>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6①(II)에 따라 자진말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 소득령 §155<23>(I)의 “임대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임대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1-부동산-7820, 2022.9.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부동산-7820, 2022.9.26.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라목1), 같은 영 제155조제23항제1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의 적용요건 중 임대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